

채무조정 요청서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	☐	☐	☐
기타			
☐ ()			

☐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3.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4.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및 당사 내규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2.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5.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7. 담보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무단 이전한 경우
 8.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
- ◇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통지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상기 주소로 서면 통지 ☐ , 상기 연락처로 전화 통지 ☐ , E-MAIL 통지 ☐]

